

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

2011. 6. 13. 제정

2017. 4. 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이화여자대학교 학칙」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(이하 “평생교육원”이라 한다)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2.26.)

제2조(지원자격) 학점인정과정(이하 “본 과정”이라 한다)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대학교를 졸업한 자
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3조(학생정원) 본 과정의 정원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. (개정 2016.2.26.)

제4조(학년도, 학기) 학년도는 1학기, 2학기로 구분하고, 필요시 하계 또는 동계에 4주 이상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모집방법 및 등록시기) 모집방법 및 등록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6.2.26.)

제6조(지원절차) 본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
2.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자격인정증명서
3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7조(전형방법)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6.2.26., 2017.4.6.)

제8조(등록)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수강신청 후,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본 과정의 학생으로 등록된다.

제9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(휴강 및 보강) ①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강은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4.6.)

②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강의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하여야 한다. (신설 2017.4.6.)

③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·보강 계획서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고, 휴·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17.4.6.)

제11조(교육과정) 본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과정에 따른

다. (개정 2016.2.26.)

제12조(교과목 이수단위)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·실습·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13조(수강신청 기준학점) 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별표 1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로 한다.

제14조(시험) 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 및 학기말에 시행하며, 필요할 경우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.

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, 실험·실습·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성적평가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, 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.

등급	점수	평점
A+	95~100	4.5
A0	90~94	4.0
B+	85~89	3.5
B0	80~84	3.0
C+	75~79	2.5
C0	70~74	2.0
D+	65~69	1.5
D0	60~64	1.0
F	0~59	0

제16조(학점인정)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할 것
2.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

제17조(출석관리) ① 모든 교과목은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교강사에 의해 매시간 출석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② 출석부는 교학실에 비치하고 관리하며, 매학기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종합적인 출결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학실은 종합 출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도탈락자를 방지하여야 한다.

④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20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7.4.6.)

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2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
3. 본인의 결혼, 출산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4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5. 업무상 출장 등 그 밖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

제18조(학점의 취소)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.

제19조(학위수여 요건) 본 과정을 수강한 자가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전공과목 48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취득하고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인정받은 자
2. 심리학전공, 아동학전공에 해당하는 자
3.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
제20조(학위수여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2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별지(서식 제1호)의 증명서에 의하여 다음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학위의 종류	전 공
문학사	심리학 아동학

제21조(학위신청 절차) ①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본교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개정 2016.2.26.)

1. 학사학위신청서
2.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(개정 2016.2.26.)
-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2.26.)
- ③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조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위수여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(개정 2016.2.26.)

제22조(학적관리) 평생교육원은 본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, 별지의 학위증명서(서식 제2호) 및 성적증명서(서식 제3호) 등을 발급할 수 있다. 기타 증명서는 「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」 제16조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7.4.6.)

제23조(전담교수진 및 전문인력) 본 과정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전공별 주임교수, 학점인정과정 팀장 및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24조(보칙)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칙 (2011. 6. 13. 제정)

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2. 26. 개정)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4. 6.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제1호)

학점인정과정 운영에 의한 학위증(제20조 관련)

제 호

학 위 증

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
이 증서를 수여함.

전 공 ○○○○(○○ 학사)

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2에 의함)

년 월 일

이화여자대학교 총 장

학위번호: 이화여대-학점-20○○-○○○

(서식 제2호)

학점인정과정 운영에 의한 학위증명서(제22조 관련)

제 00-0000 호

학 위 증 명 서

성 명 : ○○○

생 년 월 일 : ○○○○. ○. ○○

전공 및 학위명 : ○○○ 전공(문학사)

졸 업 년 월 일 : ○○○○. ○. ○○

학 위 번 호 : 이화여대-학점-0000-000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와 학칙 제50조의2 규정에
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

0000년 0월 0일

이 화 여 자 대 학 교 교 무 처 장

(서식 제3호)

학점인정과정 운영에 의한 성적증명서(제22조 관련)

증제 ○○○○ 호

성 적 증 명 서

이 름: ○ ○ ○

생 년 월 일: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과 정 명: 학점은행제 총장명의과정 ○○학 전공

연도/학기	과목명	학점	성적	등급	평점
---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

인정학점총계: ○○

평점평균: ○○/100

평점환산: ○○/4.5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와 학칙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